■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갑)] (4쪽) 작성방법 ※ 국제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별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①~⑥란：국제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⑦･⑧란：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총수를 ⑦에 기재하고, ⑦의 국외특수관계인 중 실제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수를 ⑧에 적습니다. 3. ⑨란：각 국외특수관계인의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 합계(⑲)를 모두 합산한 총합계를적습니다. 4. ⑩･⑫･⑮란：국제거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고, ⑪：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여한 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으며, ⑭：국외특수관계인이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으면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5. ⑯란：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제출인과 거래가 있는 주업종을 적고, 아래쪽 괄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코드를 적습니다. 6. ⑰란：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피지배”로 적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본점･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7. ⑳~㊶：제출인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모든 금액을 거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 및 “자본거래”에 속하지 않는 거래는 ㊴~㊶에 적습니다. 8. ㉑･㉔：매매 목적의 재고자산(상품･제품)을 제외한 유형자산 거래분을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9. ㉒･㉕：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원가분담금액 등을 적습니다. 10. ㉗･㉙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을 제외한 금액은 ‘일반용역’란에 적고,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금액은 ‘지급보증’란에 적습니다.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11. ㉘･㉚： 유형･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를 적습니다. 12. ㉜･㉟：금전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채권거래 포함)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중 차입 기간 또는 대여 기간을 곱한 값의 총합{(금액 × 일수)의 합계}을 적습니다. 13. ㉞･㊲란：대여 및 차입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을 적습니다. 14. ㊷~㊾란：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한 주식 등에 대한 취득(증자)･양도(감자) 명세를 적되, 취득･양도가액은 실제 수수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때의 주식 등은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 또는 출자지분으로, 국외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량(지분율)란에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15. ~란：제출인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분과 관련하여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증･감 현황(㊹~㊼), 에 대한 개별 명세를 적되, 취득･양도가액은 실제 수수한 금액을 적습니다. 16. . ･란：유상, 무상, 유상증자･유상감자, 무상증자･무상감자, 교환, 기타 등으로 적습니다. 17. . ･ 란:「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인과 양도인(양수인)의 특수관계 유무를 표시합니다.